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22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는 분양 상담전화(☎ 1551-8220)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개정된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2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은「주택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써「주택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2.) 현재 춘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초)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2023.06.22)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및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 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이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3.11.10.)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조성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자격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 · 2순위)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 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O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하여 청약접수를 진행하는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주택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1세대 1주택(1명을 청약)의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 현장 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9: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견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주택 청약 시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쌍용더플래티넘스카이.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 의심자로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사후)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 본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공급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는 공급금액과 별도로 인지세의 50%를 공급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시행위탁자가 선 대납하여, 공급계약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최종 매수자까지)도「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재 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인지세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인지세 납부계좌	하나은행	249-910010-99905	대한토지신탁(주)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01홍길동’ / 201호 계약자 → ‘0201홍길동’
- 분양계약 체결일에 상기 지정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인지세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수납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춘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내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시(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서류검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4.01.02.(화)	2024.01.03.(수)	2024.01.04.(목)	2024.01.10.(수)	2024.01.13.(토)~2024.01.20.(토)	2024.01.22.(월)~2024.01.24.(수)
방법	인터넷청약 (09: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자격확인 서류지참 방문접수 (10:00~17:00)	계약서류 지참 방문계약 (10:00~17: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 견본주택 방문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421-1번지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2023.12.22.)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춘천시 민원담당관-34590호(2023.12.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약사동 150-10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39층 아파트 1개동 총 2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00세대(기관추천 19세대, 다자녀가구 21세대, 신혼부부 36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18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8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3000685	01	084.9406A	84A	84.9406	33.4493	118.3899	66.6435	185.0334	10.9263	31	4	3	6	1	3	17	14	1
		02	084.9067B	84B	84.9067	35.4114	120.3181	66.6169	186.9350	10.9220	30	3	3	6	1	3	16	14	-
		03	084.9798C	84C	84.9798	34.4051	119.3849	66.6742	186.0591	10.9314	32	3	3	6	1	3	16	16	-
		04	084.9865D	84D	84.9865	34.9736	119.9601	66.6795	186.6396	10.9322	34	3	3	6	1	3	16	18	1
		05	084.9307E	84E	84.9307	34.4036	119.3343	66.6357	185.9700	10.9250	34	3	3	6	1	3	16	18	1
		06	084.9818F	84F	84.9818	34.3293	119.3111	66.6758	185.9869	10.9316	33	3	3	6	1	3	16	17	1
		07	100.9883	100	100.9883	40.6804	141.6687	79.2343	220.9030	12.9906	32	-	3	-	-	-	3	29	1
		08	140.6972A	140A	140.6972	56.3155	197.0127	110.3896	307.4023	18.0986	1	-	-	-	-	-	-	1	-
		09	140.9485B	140B	140.9485	56.2290	197.1775	110.5867	307.7642	18.1330	1	-	-	-	-	-	-	1	-
합 계											228	19	21	36	6	18	100	128	5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부대복리시설 및 관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각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면적분할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오차면적은 각단지의 특정 세대에 합산하여 등기 시 등재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상위계획 변경 및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 동 ·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럭,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지분면적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 · 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처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주택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5세대)는 총 228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 · 층 · 향 · 호별 구분 없이 청약 주택형별,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무작위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 세대, 원, VAT포함)

약식표기	라인별구분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 후 30일내	2024.06.24	2025.02.24	2025.09.24	2026.09.28	2027.02.24	2027.08.24	입주 시
84A	7호	4	1	31	74,568,400	479,431,600	-	554,000,000	10,000,000	4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66,200,000
		5	1		75,779,800	487,220,200	-	563,000,000	10,000,000	4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6	1		76,991,200	495,008,800	-	572,000,000	10,000,000	4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171,600,000
		7	1		78,216,060	502,883,940	-	581,100,000	10,000,000	48,110,000	58,110,000	58,110,000	58,110,000	58,110,000	58,110,000	58,110,000	174,330,000
		8	1		79,427,460	510,672,540	-	590,100,000	10,000,000	4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177,030,000
		9	1		80,235,060	515,864,940	-	596,100,000	10,000,000	49,610,000	59,610,000	59,610,000	59,610,000	59,610,000	59,610,000	59,610,000	178,830,000
		10~19	9		81,056,120	521,143,880	-	602,200,000	10,000,000	50,220,000	60,220,000	60,220,000	60,220,000	60,220,000	60,220,000	60,220,000	180,660,000
		20~29	10		81,863,720	526,336,280	-	608,200,000	10,000,000	50,820,000	60,820,000	60,820,000	60,820,000	60,820,000	60,820,000	60,820,000	182,460,000
		30~35	6		82,671,320	531,528,680	-	614,200,000	10,000,000	51,420,000	61,420,000	61,420,000	61,420,000	61,420,000	61,420,000	61,420,000	184,260,000
84B	5호	6	1	30	79,831,260	513,268,740	-	593,100,000	10,000,000	4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177,930,000
		7	1		81,096,500	521,403,500	-	602,500,000	10,000,000	5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180,750,000
		8	1		82,348,280	529,451,720	-	611,800,000	10,000,000	51,180,000	61,180,000	61,180,000	61,180,000	61,180,000	61,180,000	61,180,000	183,540,000
		9	1		83,196,260	534,903,740	-	618,100,000	10,000,000	51,810,000	61,810,000	61,810,000	61,810,000	61,810,000	61,810,000	61,810,000	185,430,000
		10~19	9		84,030,780	540,269,220	-	624,300,000	10,000,000	52,430,000	62,430,000	62,430,000	62,430,000	62,430,000	62,430,000	62,430,000	187,290,000
		20~29	10		84,878,760	545,721,240	-	630,600,000	10,000,000	5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189,180,000
		30~36	7		85,713,280	551,086,720	-	636,800,000	10,000,000	53,680,000	63,680,000	63,680,000	63,680,000	63,680,000	63,680,000	63,680,000	191,040,000
84C	4호	6	1	32	79,212,100	509,287,900	-	588,500,000	10,000,000	48,850,000	58,850,000	58,850,000	58,850,000	58,850,000	58,850,000	58,850,000	176,550,000
		7	1		80,463,880	517,336,120	-	597,800,000	10,000,000	49,780,000	59,780,000	59,780,000	59,780,000	59,780,000	59,780,000	59,780,000	179,340,000
		8	1		81,715,660	525,384,340	-	607,100,000	10,000,000	50,710,000	60,710,000	60,710,000	60,710,000	60,710,000	60,710,000	60,710,000	182,130,000
		9	1		82,550,180	530,749,820	-	613,300,000	10,000,000	51,330,000	61,330,000	61,330,000	61,330,000	61,330,000	61,330,000	61,330,000	183,990,000
		10~19	9		83,384,700	536,115,300	-	619,500,000	10,000,000	51,950,000	61,950,000	61,950,000	61,950,000	61,950,000	61,950,000	61,950,000	185,850,000
		20~29	10		84,219,220	541,480,780	-	625,700,000	10,000,000	52,570,000	62,570,000	62,570,000	62,570,000	62,570,000	62,570,000	62,570,000	187,710,000
		30~38	9		85,053,740	546,846,260	-	631,900,000	10,000,000	53,190,000	63,190,000	63,190,000	63,190,000	63,190,000	63,190,000	63,190,000	189,570,000
84D	3호	4	1	34	76,304,740	490,595,260	-	566,900,000	10,000,000	4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170,070,000
		5	1		77,556,520	498,643,480	-	576,200,000	10,000,000	47,620,000	57,620,000	57,620,000	57,620,000	57,620,000	57,620,000	57,620,000	172,860,000
		6	1		78,794,840	506,605,160	-	585,400,000	10,000,000	48,540,000	58,540,000	58,540,000	58,540,000	58,540,000	58,540,000	58,540,000	175,620,000
		7	1		80,046,620	514,653,380	-	594,700,000	10,000,000	49,470,000	59,470,000	59,470,000	59,470,000	59,470,000	59,470,000	59,470,000	178,410,000
		8	1		81,284,940	522,615,060	-	603,900,000	10,000,000	50,390,000	60,390,000	60,390,000	60,390,000	60,390,000	60,390,000	60,390,000	181,170,000
		9	1		82,119,460	527,980,540	-	610,100,000	10,000,000	51,010,000	61,010,000	61,010,000	61,010,000	61,010,000	61,010,000	61,010,000	183,030,000
		10~19	9		82,940,520	533,259,480	-	616,200,000	10,000,000	51,62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184,860,000
		20~29	10		83,775,040	538,624,960	-	622,400,000	10,000,000	52,24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186,720,000
		30~38	9		84,609,560	543,990,440	-	628,600,000	10,000,000	52,860,000	62,860,000	62,860,000	62,860,000	62,860,000	62,860,000	62,860,000	188,580,000
84E	2호	4	1	34	75,160,640	483,239,360	-	558,400,000	10,000,000	45,840,000	55,840,000	55,840,000	55,840,000	55,840,000	55,840,000	55,840,000	167,520,000
		5	1		76,385,500	491,114,500	-	567,500,000	10,000,000	46,750,000	56,750,000	56,750,000	56,750,000	56,750,000	56,750,000	56,750,000	170,250,000
		6	1		77,610,360	498,989,640	-	576,600,000	10,000,000	47,660,000	57,660,000	57,660,000	57,660,000	57,660,000	57,660,000	57,660,000	172,980,000
		7	1		78,835,220	506,864,780	-	585,700,000	10,000,000	48,570,000	58,570,000	58,570,000	58,570,000	58,570,000	58,570,000	58,570,000	175,710,000
		8	1		80,060,080	514,739,920	-	594,800,000	10,000,000	4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178,440,000
		9	1		80,881,140	520,018,860	-	600,900,000	10,000,000	50,090,000	60,090,000	60,090,000	60,090,000	60,090,000	60,090,000	60,090,000	180,270,000
		10~19	9		81,702,200	525,297,800	-	607,000,000	10,000,000	5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82,100,000
		20~29	10		82,509,800	530,490,200	-	613,000,000	10,000,000	5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183,900,000
		30~38	9		83,330,860	535,769,140	-	619,100,000	10,000,000	5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185,730,000
84F	1호	4	1	33	74,393,420	478,306,580	-	552,700,000	10,000,000	4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165,810,000
		5	1		75,604,820	486,095,180	-	561,700,000	10,000,000	46,170,000	56,170,000	56,170,000	56,170,000	56,170,000	56,170,000	56,170,000	168,510,000
		6	1		76,816,220	493,883,780	-	570,700,000	10,000,000	47,070,000	57,070,000	57,070,000	57,070,000	57,070,000	57,070,000	57,070,000	171,210,000
		7	1		78,027,620	501,672,380	-	579,700,000	10,000,000	47,970,000	57,970,000	57,970,000	57,970,000	57,970,000	57,970,000	57,970,000	173,910,000
		8	1		79,252,480	509,547,520	-	588,800,000	10,000,000	48,880,000	58,880,000	58,880,000	58,880,000	58,880,000	58,880,000	58,880,000	176,640,000
		9	1		80,060,080	514,739,920	-	594,800,000	10,000,000	4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178,440,000
		10~19	9		80,867,680	519,932,320	-	600,800,000	10,000,000	50,080,000	60,080,000	60,080,000	60,080,000	60,080,000	60,080,000	60,080,000	180,240,000
		20~29	10		81,675,280	525,124,720	-	606,800,000	10,000,000	50,680,000	60,680,000	60,680,000	60,680,000	60,680,000	60,680,000	60,680,000	182,040,000
		30~37	8		82,482,880	530,317,120	-	612,800,000	10,000,000	51,280,000	61,280,000	61,280,000	61,280,000	61,280,000	61,280,000	61,280,000	183,840,000
100	6호	4	1	32	83,305,020	535,964,850	53,630,130	672,900,000	10,000,000	57,290,000	67,290,000	67,290,000	67,290,000	67,290,000	67,290,000	67,290,000	201,870,000
		5	1		84,666,820	544,726,350	54,506,830	683,900,000	10,000,000	58,390,000	68,390,000	68,390,000	68,390,000	68,390,000	68,390,000	68,390,000	205,170,000
		6	1		86,016,240	553,408,200	55,375,560	694,800,000	10,000,000	59,480,000	69,480,000	69,480,000	69,480,000	69,480,000	69,480,000	69,480,000	208,440,000
		7	1		87,378,040	562,169,700	56,252,260	705,800,000	10,000,000	60,580,000	70,580,000	70,580,000	70,580,000	70,580,000	70,580,000	70,580,000	211,740,000
		8	1		88,739,840	570,931,200	57,128,960	716,800,000	10,000,000	6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215,040,000
		9	1		89,643,580	576,745,650	57,710,770	724,100,000	10,000,000	62,410,000	72,410,000	72,410,000	72,410,000	72,410,000	72,410,000	72,410,000	217,230,000
		10~19	9		90,547,320	582,560,100	58,292,580	731,400,000	10,000,000	63,140,000	73,140,000	73,140,000	73,140,000	73,140,000	73,140,000	73,140,000	219,420,000
		20~29	10		91,451,060	588,374,550	58,874,390	738,700,000	10,000,000	63,870,000	73,870,000	73,870,000	73,870,000	73,870,000	73,870,000	73,870,000	221,610,000
		30~36	7		92,354,800	594,189,000	59,456,200	746,000,000	10,000,000	6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223,800,000
140A	5호	37	1	1	194,935,480	1,254,168,900	125,495,620	1,574,600,000	10,000,000	147,460,000	157,460,000	157,460,000	157,460,000	157,460,000	157,460,000	157,460,000	472,380,000
140B	3호	39	1	1	195,096,420	1,255,204,350	125,599,230	1,575,900,000	10,000,000	147,590,000	157,590,000	157,590,000	157,590,000	157,590,000	157,590,000	157,590,000	472,77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시행령 제60조)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정책 · 관계법령 대출상품의 종류 ·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를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406A	084.9067B	084.9798C	084.9865D	084.9307E	084.9818F	100.9883	140.6972A	140.9485B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100	140A	140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 ·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금액은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회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하고 소수점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등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른 동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 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이동통신 중계장치는 옥상층, 통신실, 지하층 환풍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이동통신 통화품질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자 발표 일시 ·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1.02.(화) (청약 Home 인터넷 : 09:00 ~ 17:30) (견본주택 : 10:00 ~ 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또는 스마트폰 앱 · 견본주택 방문 청약 - 노약자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견본주택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421-1번지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

구분		84A	84B	84C	84D	84E	84F	100	140A	140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1	1	1	-	1	1	-	-	-	5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1	1	1	-	-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	1	-	1	-	-	-	3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	-	-	-	-	-	3
	장애인 강원특별자치도	1	1	1	1	1	-	-	-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3	3	3	3	3	3	-	-	21
신혼부부 특별공급		6	6	6	6	6	6	-	-	-	3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1	1	1	1	-	-	-	6
생애최초 특별공급		3	3	3	3	3	3	-	-	-	18
합계		17	16	16	16	16	16	3	-	-	10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우선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The PLATINUM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
1551.8220
총 228세대 84·100·140m²